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70호 2019. 1. 23. (수)

# 【고 시】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13, FAX:560-2592)

#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9-8호

#### 정선 군관리계획(고한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1.강원도고시 제2003-300호(2003.12.13.)로 고시한 정선 군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건과 정선군고시 제2016-55호(2016.7.1.)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사항 중 오류 사항에 대하여 정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합니다.
- 3.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11일

#### 정 선 군 수

- 가. 결정(변경)취지(정정사유) : 2016.7.1. 결정(변경) 고시한 고한·사북 도시지역 지구 단위계획 변경 사항 중 고한1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오류사항을 정정하고 이 를 반영하고자 함.
- 나. 정정내용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의 내용 및 선형 정정에 의한 면적 보정 등
- 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조서 : 변경없음

7 11	도면	7.64	د د		면 적(m²)		최초	, 1) =
구분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 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5	고한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고한읍 고한리 152-1전 일원	19,342	-	19,342	강고 제83호 (2002.4.15)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성비(%)	비고	
丁 亚	기 정	변 경	변경 후	T/8 H(%)	미끄
합 계	19,342	_	19,342	100.0	
일반상업지역	19,342	-	19,342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변경

#### 가. 도로

#### 1)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十七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2	304	1	91	1	213	-	-
중로	1	213	_	-	1	213	_	-
소로	1	91	1	91	-	-	-	-

#### 2)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규	모			연장			시요	주 요	<b>刻</b> え	_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2	8	15	보조간 선도로	213	3호 광장 고한리 149-2도	고한리 273천	일반도 로	고한사북 버스터미널	강고 제83호 (02.4.15)	
기정	소로	1	21	10	국지 도로	2,712 (91)	중로 2-8 고한리 273천	고한구역계 고한리 237대	일반 도로	종합 운동장	정고 제25호 (16.4.15)	

(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 나. 자동차정류장

1)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조서 : (경미한 변경 면적오류정정)

7 11	도면	al almi	אוא או	ما حا		면 적 (m²)		최초	n) -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변경	1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터 미널	고한읍 고한리 273-12천 일원	5,730	감)687	5,043	강고 제300호 (03.12.13)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자동차 정류장	○ 면적변경 A=5,730㎡→ 5,043㎡ 감)687㎡	○고한리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운영중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등재오류사항과 면적오류를 정정

-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변경)(안) 조서
- 1. 가구 및 획지 계획 : 변경없음

### 가. 단위대지 규모

구분	시설명	계획내용	म] <u>ग</u>
	주 거 지 역	○최소개발규모 : 60㎡, 최대개발규모 : 1,000㎡	
기정	상 업 지 역	○최소개발규모 : 150㎡, 최대개발규모 : 2,000㎡	
	공 동 건 축	○공동건축(규제 또는 권장)등이 표시된 경우 그에 합당하게 건축	

#### 나. 공동건축

구분	시설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공공건축을 토지소유자간 합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필지의 경우 ○일부 맹지형 필지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여러개의 필지에 1개의 건축물이 입지한 경우	

# 다. 대지분할가능선

구	대지분할가능선	비고
기	○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 할 수 있는 위치 지정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변경(면적오 류정정)

## 가. 기정

구분	구분 가구 기정면적 건분 번호 (m)		획 지		비고
ਜੋਦ	번호	(m²)	위 치	변경면적(m²)	H  75
기정	A1	10,497	고한읍 고한리 152-1번지 일원	10,497	
기정	A2	4,870	고한읍 고한리 273-12번지 일원	4,870	

### 나. 정정사항

l	구분	) 가구	기정면적 (㎡)	획 지	비고	
	干正	번호	(m²)	위 치	변경면적(m²)	H  77.
	변경	A1	10,497	고한읍 고한리 152-1번지 일원	10,851	
	변경	A2	4,870	고한읍 고한리 273-12번지 일원	5,043	

- ④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조서
  -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 경없음

## 가. 불허용도

구분	건물전체 불허용도	1층 전면 불허용도
1 일반 상업 지역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창고시설 ○ 왕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	○건축자재 관련업종 ○간이공작소 (목공소, 철공소, 알루미늄 공작업등)
2 고한 1구역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상 동
3 일반 주거 지역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	○상 동

### 나. 권장용도

구분	권장용도	비고
A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 의한 위락시설	○전층 권장용도
В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ㅇ전층 권장용도
С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 휴게음식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1층 권장용도
D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판매 및 영업시설 중 - 도·소매시장 - 상점	○전층 권장용도
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업무시설	○전층 권장용도

### 다. 건폐율

구분	건폐율	비고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구)고한초교 주변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 라. 용적률

#### 1) 용적률 계획

구분	권장	용도	비고	
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미끄	
중심지 형성지역	400%~500%	500%~600%	고한시장 및 고한역세권 주변	
기타 상업지역	300%~400%	350%~550%		
주거지역	150%~300%	200%~350%	(구)고한초교 주변	

2) 용적률 완화적용(Incentive)에 관한 계획

구분 완화기준			완화기준	비고
	공동	규제사항	○30%	
	건축	권장사항	○40%	
	경사지-	붕의 처리	○ 20%	
허	경사지붕색채		○10%	
අං අං	건축한계선		○(조성면적÷총대지면적)×기준용적률	
적	전층권장용도		○(권장용도 누계면적÷총지상연면적)×기준용적률×1.5	
률			○(지상접지층 권장용도면적÷총지상연면적)×기준용적률×1.5	
	공개공지		○{(조성면적-설치의무면적)÷총대지면적}×기준용적률×1.5	
	전면공지		○{(조성면적-설치의무면적)÷총대지면적}×기준용적률×1.5	
	공동주차장 조성		○기준용적률×0.1	
	상한용?	덕률	○시행지침 제11조 4항 참조	

주 : '경사지붕의 처리'와 관련한 완화기준은 시행지침 제32조에 의한 경사지붕처리 조항의 ①항 권장사항을 준수하였을 경우 적용

#### 마. 높이

구분	최고높이	비고
중심지 형성지역	8층~12층 이하	고한시장 및 고한역세권 주변, (구)고한초교
기타 상업지역	8층~10층 이하	
주거지역	4층 <sup>~</sup> 7층 이하	(구)고한초교 주변 : 7층 이하

#### 바. 배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ul> <li>○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li> <li>○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되는 대지의 공지는 담장, 계단, 화단, 환기구, 건축물 부설 주차장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식물을 설치할 수 없음</li> <li>○건축선 후퇴부분은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처리하며, 보도와 동일한 포장, 또는 장식포장이 되도록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조성</li> </ul>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도	。 불허용도 2 / 권장용도 C	
			건 폐 율	。 80%	
			용 적 률	· 기준 : 300% 허용 : 350%	
-1-2	Λ1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높 이	∘ 8층(28m)이하	
기정	A1	152-1번지 일원	배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 보차혼용통로
			용 도	· 불허용도 2(여객자동차정류장)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건 폐 율	• 60%	
			용 적 률	· 기준 : 250% 허용 : 300%	
기정	4.0		높 이	∘ 6층(21m)이하	
/1/8	A2	273-12번지 일원	배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ul><li>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li></ul>	
			건 축 선	· 해당사항 없음	

- 5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1.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내용 : 변경없음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위치 및 조성 면적, 최소폭원 확보 및 인접대지와의 연계 조성	○ 대형필지

### 나. 경관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외벽처리	○주변경관과 조화된 형태 및 재료사용 권장	
옥외광고물	○광고물의 난립방지 및 가로경관 고려 ○지주형 간편의 설치제어 지침 제시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설치·표시금지 ○판류형 간판은 원색사용 지양	
색채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 유도	
1층부 형태	○개구부 통일성 유지 ○투시형 셔터 권장	
조명	○가로경관 수준 향상 및 야간 경관 증진 ○건축물의 외벽 조명 설치 권장	
경사형 지붕	○계획대상지 가로경관 증진과 옥상 경관 향상 ○옥상면적의 일부 경사지붕 처리 (권장) - 주거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30% 이상 - 상업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40% 이상 - 공공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50% 이상	
투수성 포장	○투수성 포장재 : 흙, 잔디, 자갈, 기타 투수성 포장재 ○전체 포장면적의 70% 이상을 투수성 포장 권장	

### 다.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공동주차 출입구	○주차통로의 확보가 어려운 간선도로변 대지	
보차혼용통로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 확보 ※ 공동건축이행 또는 자율적인 분할.합병이 이루어져 보차혼용통로의 변경이 요구될 시에는 정선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A1	고한리 152-1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A2	고한리 273-12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9-47호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1일

정 선 군 수

-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240-9번지 일원
- 3.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 조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 4.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 도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 5. 관련도서 비치 및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임계면사무소
-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부터 14일(2019. 1. 11 ~ 1. 27)
- 7.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임계면사무소에 서면 제출
- 8. 기타사항: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 급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del>완충녹</del> 지) 결정(변경)(안) 공람 · 공고 열람자 의견서			
공 람 건 명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안)	접수번호 접 수 일 2019		
	주 소			
공 람 인 인 적 사 항	성 명			
	연 락 처			
	위 치			
토지소재지	면 적			
	기 타 사 항			
공 람의 견				
	신청인	(인)		
정 선 군	수 귀하			

# 공람공고 열람자 등록부

연번	주 소	성 명	서	명	비고

정선군 공고 제2019-54호

#### 2019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공고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생산기반시설의 규모화 · 현대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소 득분야 농림자율사업에 대한 우리군 2019년도 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정 선 군 수

- 1. 2019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2019. 02. 10까지
  - 신청대상 : 정선군 관내 주소를 둔 임업인(이하 "관내 임업인"이라 한다) 생산자단체(영농

조합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자격
- · 생산자(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임업인" 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4.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워의 지원대상 품목
- 대상사업 : 임산물상품화,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친환경임산물재배, 산림 작물 생산단지(소액),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 접수처 : 정선군청 산림과(033-560-2169) 또는 e나라도움(www.gosim.go.kr)을 통한 온 라인 신청

####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별로 규정한 신청서를 이용하고 규정한 신청서식 이 없을시 붙임의 공통서식 이용
- 임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일지, 농영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대출신 청자료(융자포함 경우) 등
-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 사업참여자 명단 및 조직구성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등), 농업 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와 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순위 결정
- ※ 공고문에 게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적용(산림청)

### 2. 사업별 지원사업 내역

### ○ 사업비

	110131		,	사업비 세부	내역(천원)			재원비율
사업명	사업량	합 계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	(국:도:군:융:자)
<u></u> 합계		1,698,869	348,484	103,750	425,009	326,609	495,018	
임 산 물 상 품 화 (포 장 재)	9건	226,523	45,304	13,593	54,365	45,304	67,957	20:6:24:20:30
임 산 물 상 품 화 (지리적표시등록)	2건	40,000	8,000	2,400	29,600	_	_	20:6:74:0:0
산 양 삼 생 산 과 정 확 인 제 도	70건	14,000	5,600	2,520	5,880	_	_	40:18:42:0:0
친환경임산물재배 (토양개량제)	2ha	7,294	5,106	438	1,021	_	729	70:6:14:0:10
친환경임산물재배 ( 유 기 질 비 료 )	905포	4,527	3,169	407	951	_	정액보조	70:9:21:0:0
산림작물생산단지 ( 소 액 )	10개소	750,000	150,000	45,000	180,000	150,000	225,000	20:6:24:20:30
산림복합경영단지 ( 소 액 )	1개소	109,000	21,800	6,540	26,160	21,800	32,700	20:6:24:20:3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산림버섯시설)	1개소	14,865	2,973	892	3,568	2,973	4,460	20:6:24:20:3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톱 밥 배 지 시 설)	1개소	23,810	4,762	1,429	5,714	4,762	7,143	20:6:24:20:3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생 산 장 비 )	2개소	43,740	8,748	2,624	6,124	8,748	17,496	20:6:24:20:30
임산물유통기반조성 ( 냉 동 유 통 차 량 )	2개소	40,000	8,000	2,400	9,600	8,000	12,000	20:6:24:20:30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저 장·건 조시설)	7개소	385,110	77,022	23,107	92,426	77,022	115,533	20:6:24:20:30
임산물유통기반조성 ( 가 공 장 비 )	4건	40,000	8,000	2,400	9,600	8,000	12,000	20:6:24:20:30

※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미포함

## ○ 지원한도 및 사업내용

○ 시천안도 못 사업대용 					
사업명	지원한도·지원단가 및 사업내용				
임산물상품화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산양삼생산과정 확인제도	-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 생산자 1인당 2건 이내, 1건당 20만원				
친환경임산물재배 (토양개량제)	- 수실류(밤)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밤 이외 수실류) ha당 총사업비 756천(밤의 1.5배) - 관상산림식물류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잔디 ha당 총사업비 1,150천원 ※ 지원받은 토양개량제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				
친환경임산물재배 (유기질비료)	- 유기질비료 : 정액보조(1,700원/포(20kg)) - 혼합유박 : 정액보보(5,000원/포(20kg)) - 부숙유기질 비료 : 1,700원~1,400원/포(20kg)) ※ 지원받은 토양개량제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 약용・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감시시설,액비저장시설,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관장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생산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피종 또는 묘목식재 등 - 지원한도: 1억이내				
산림복합경영단지 (소액)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작업로 등 숲가꾸기 사업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 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관리사) 등 - 지원한도: 1억이내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생산장비: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작업로: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 - 시설(보수):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밤나무노령목관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총사업비 기준 1,292천원/ha)				
임산물유통기반조성	- 냉동유통차량 : 건당 20백만원 이내 - 유통기자재 :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 저장·건조시설 : 건당 100백만원 이내(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시설,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 100㎡까지 가능 - 가공장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등 단순 가공장비 및 탈삽제)				

- 3. 사업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 섯 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 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품목

####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관내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
  - ㆍ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임업인" 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4.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4. 삭제 <2015.12.22>
-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지원의 경우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는 2020년부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 ○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
-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1]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사업의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
  - \*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 구매, 2억원 이하의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 시 개별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자격확인 철저

#### < 우선 지원 >

-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단체
- 「농어업재해보험법」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 4.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 가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 가-1 토양개량제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사립대경자	대경자 건경	[ 신성성격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 신성기간
관내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70	30	_	_	~전년도 1월20일

#### ○ 사업 목적

- 제초제, 화학비료 등의 사용 억제로 토양산성화 방지 및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 지원 내용

- (석회질비료)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목탄, 목초액
- (규산질비료) 규산, 수용성 규산염
  - \*「비료관리법」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토양개량 효과' 표시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받은 토양개량제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
  - \* 지자체 공무원, 이장님 등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
- 지원 한도(총사업비 기준)

구 분	지 원 한 도
수실류	(밤)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밤 이외 수실류) ha당 총사업비 756천원(밤의 1.5배)
관상산림식물류	(관상산림식물류)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선정산림식물규 	(잔디) ha당 총사업비 1,150천원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기타)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정 시비량

## 가-2 유기질비료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금액				신청기간
사립대경자	네경자 건경 	신성경역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선정기선
관내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800 ~ 3,500	600~ 1,500	-	-	~전년도 1월20일

#### ○ 사업 목적

- 제초제, 화학비료 등의 사용 억제로 토양산성화 방지 및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 지원 내용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 지원 조건 및 단가

-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

(단위: 원/20kg)

구분		지방비		
T 正	특등급	1등급	2등급	시장비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3,500			1,500
ㅠ기질미료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100			6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600

-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유기질비료지원사 업' 준용. 단, 혼합유박은 산림청이 정한 단가를 적용
- 지원받은 토양개량제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
  - \* 지자체 공무원, 이장님 등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

#### ○ 지원 한도(총사업비 기준)

-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정 시비량 적용

# 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 나-1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7 H		산림작물생신	난단지 조성사업			
구분 	공모	사업	소액사업			
사업대상자	임업후계지 신지식농업인(임업 <u>년</u>	· · · · · · · · · · · · · · · · · ·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대상자 선정	지방자	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비율	국고 40%, 지방비 20%	, 융자 -, 지부담 40%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지부담 40%			
신청기간	전년도	4~9월	~전년도 1월20일			
사업 목적		l 품목별 집단화·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 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지정리작업, 울타 ·나지, 종자파종, 편	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 관리사 등			
   지원 내용	(산나물류・수실류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시권 내용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생산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지원 한도	(노지재배) 1억원 (시설재배) 2억원 * 설계·감리비(5%		1억원 이내 * 단일사업(울타리설치 등) 의 경우 사			
기준)	(55% 이상),	종자·묘목구입비 사 부대비(10% 이내)	업성격에 맞게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종자·종묘 구입은 단일사 업 불가)			
	- 톱밥배지 생산시설	i은 지자체, 산조중앙	회 및 시・군 조합은 '19년부터 지원 제한			
	- 공모사업 지원조건(품목별 면적기준)					
	구 분	05.000 0/7/14 01	세 부 내 용			
기타	약용류·약초류· 산나물류·수실류· 수목부산물류		상 · 25,000㎡ 미만이라도 소득생산의 ·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산림버섯류	* 톱밥배지 생산시실	노지재배, 송이산 가꾸기 포함) 설(재배사 포함)은 건축면적 1,650㎡ 이상			
	관상산림식물류	* 단, 1개 단지 규도	상(시설), 10,000㎡/개소 이상(노지) 과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 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1					

# 나-2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	년 명단지 조성사업
구분	공모사업	소액사업
사업대상자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대상자선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비율	국고 40%, 지방비 40%, 융자 -, 지부담 20%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지부담 40%
신청기간	전년도 4~9월	~전년도 1월20일
사업 목적	숲을 가꾸면서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현대화를 지원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지원 내용	<ul> <li>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산물수집, 작업로 등 숲가꾸기</li> <li>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li> <li>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li> </ul>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
지원조건	으로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산림을 복합적으로 경영을 하고자하는 자  * 산림사업 면적 규모에 따라 사업비율 차등 적용
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	1억원 ~ 5억원이내 (2~3년간 분할지원)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준)는 설계·감리비(5% 이내), 기반 조성비(55% 이상), 종자·묘목구입비 (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성격에 맞게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종자·종묘 구입은 단일사
기타	지 및 모두베기가 기 실행된 사업자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결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여 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	는 제외) 준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 지는 대상지에서 제외 출금지 구역 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이동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 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연접지에서

#### 【 공모사업 유의사항 】

- (사업대상) '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 '19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 추진
  -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
- (사업비율)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 산림소득 공모사업계획 변경 승인기준(산림경영소득과-1618, '14.3.28)에 따라 처리
  - \* 토목 공사비 :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 (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기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
- (기타) 산림소득지원사업 표준품셈(안)을 참고·활용하여 사업 지원
  - \* 산림청 홈페이지 > 분야별산림정보 > 통합자료실 > 통합자료실
-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공모 및 소액)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반드시 검토한 후 조 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시행
    -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제시 시 단가 조정 가능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인건비	2019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 등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종자산업법」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자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같은법 제38조에따라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한 자에게서 구입 * 산양삼 종자·종묘는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총 사업비 30% 범위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토양개량비료	조달가격 적용	
표고버섯	(지원 대상)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표고목에서 표고를 재배(노지)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기존 산림복합경영 사업자가 표고목 단일 종목으로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신청 가능(보조율 형평성 유지)	
자목 구입	(지원 비율)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 (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20%), 융자 (20%), 자부담(40%)	
	· · — · — /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7-120호)에서 표고원목 실거래가의 평균가격 적용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 계산서 등)
표고버섯 톱밥배지	*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만든 표고 톱밥배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①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② 6,000봉 이상 표고톱밥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 하고 있는 자	매년 지원 불가 (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구입	(지원 비율) - 공모사업: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	
	- 봉당 기준금액 : 접종배지 63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840원/kg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 배지 무게, 형태 차이를 반영하여 시중 거래가 평균가격 적용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 면적당 봉수 : (원통형) 10,000봉/330㎡ (봉 형) 6,000봉/330㎡ (사 각) 8,000봉/330㎡ - 지원 한도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 반드시 확인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 계산서 등) * 종자업 등록, 생산 판매신고, 통상실시 등을 통해 배지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 한 경우만 지원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	(지원 대상)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 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지원 비율) - 공모사업: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 (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소액사업: 국고(20%), 지방비(20%), 융자 (20%), 자부담(40%)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 본당 금액: 1,000원(W 30cm × L 20cm) - 면적당 본수: 36본/㎡(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 - 지원 한도: (임업인 등) 5,000본 이내,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 계산서 등) * 종자업 등록, 생산 판매신고, 통상실시 등을 통해 배지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 한 경우만 지원
복령버섯 자목 구입	(지원 대상)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 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지원 비율) - 공모사업: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 (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소액사업: 국비(20%), 지방비(20%), 융자 (20%), 자부담(40%)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ul> <li>본당 금액: 2,000원(W 15~20cm × L 30cm)</li> <li>면적당 본수: 577본/330㎡</li> <li>지원 한도: (임업인 등)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li> <li>* 공모사업은 복령 자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li> <li>*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li> </ul>	증빙 필수(전자세금 계산서 등) * 종자업 등록, 생산 판매신고, 통상실시 등을 통해 배지판매가
송이산 가꾸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기준단가 적용	
산림버섯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 배양실 등) * 톱밥배지를 생산 하여 판매 또는 자가소비하기 위 한 시설	(지원요건)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인 등 또는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임업인종합연수원,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포함하여야함 -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종자산업법」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종자업'등록 및 '생산・수입판매 신고(필요시)'를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지원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및 지역산림조합은 '19년부터 톱밥배지 생산시설 지원 제한
대추비가림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관수·관정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지원 요건) -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1일 양수량 30톤 이상, 수중모터 3HP 이상 (지원 한도)	* 재배면적이 1ha 이상 인 자,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 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관수·관정시설 모두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	포함한 단가
관수·관정시설 (기타 품목)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스프링클러 : 6,000천원/0.5ha - 점적 : 4,500천원/0.5ha - 관정(6인치, 일반형) : 9,400천원/공	*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냉해예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감시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카메라 등)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전기 울타리 : 1,500천원/0.5ha - 철조망 : 1,000천원/0.5ha	
모노레일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하우스 시설 (관상산림식물)	- 1,500천원/0.5ha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 유리 온실: 800천원/3.3㎡ -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관리사	(지원 요건) 시설규모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 또는「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 시설규모 이내만 지원기 <del>능 /규</del> 모이상은 지원대상 제외 * 산림사업 관리(장비 보관 등)에 필요힌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상·하수 시설 등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임산물 저장 • 건조시설	(지원 요건) - 시설규모 100㎡ 이내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 한도) - 총사업비 100백만원 - 저온저장 시설: 250만원/3.3㎡(농정시책 준용)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 50백만원/개소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 시설 지원사업 참조
작업로 시설 (신규)	(지원 요건) 노폭 2m 내외의 작업하되,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콘크리트 포장은 지원대상 아님(필요시 자부담) (지원 단가)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ㅂ	시원기기		
사립네정사	대경자 신경	_ 1000A	구	지	용	자	신청기간 <u> </u>
산양삼 생산자(임업인), 생산자 단체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확인 후 지원	40	60	_	_	~전년도 1월20일

#### ○ 사업 목적

- 산양삼의 재배과정의 생산이력관리와 안전성검사

#### ○ 지원 내용

- (생산적합성조사) 토양, 종자·종묘 검사 수수료
- (품질검사) 산양삼 검사 수수료

#### ○ 지원 조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합격이며, 해당 정 선군에 생산신고 및 파종·식재한 자
- 해당 정선군에 생산신고한 자로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자

#### ○ 지원 한도 및 단가

- 생산자 1인당 2건 이내, 1건당 20만원
  - \*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 예산이 편성된 정선군에 한하며, 정선군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라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신청기간			
사립대경자	대경자 신경	[ 신성당역	국	지	융	자	[ 건성기간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20	30	20	30	~전년도 1월20일

-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
-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사업 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신규 및 보완)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증대 도모

#### ○ 지원 내용 및 한도

- 지원한도 : 총사업비 1억원 이내(생산장비+작업로시설+밤나무노령목관리)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생산 장비	(일반)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한개 품목 재배면적 10ha 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 (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 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사용 교사)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작업로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시설	위주로 시설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보수)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밤나무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	총사업비 기준 1,292천원/ha
노령목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관리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I

## 3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 1.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

내역 사업		보조비율(%)			융자조건	비고
대략 사립 	국	지	융	자	(금리, 거치/상환)	414
가. 임산물 상품화 지원	20	30	20	30	2.0%, 3년/7년	
나.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20	30	20	30	2.0%, 3년/7년	

-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 \* 위의 내역사업 중 HACCP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를 우선적 지원
- \*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는 2020년부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내역 사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가. 상품화 지원	- 국비 10백만원(총사업비 50백만원) / 건					
	- 냉동탑차 : 국고 4백만원(총사업비 20백만원) / 건					
   나. 유통기반조성	- 유통기자재 : 국고 4백만원(총사업비 20백만원) / 건					
다. ㅠ공기반조성   	- 저장·건조시설 : 국고 20백만원(총사업비 100백만원) / 건					
	- 가공장비 : 국고 10백만원(총사업비 50백만원) / 건					

2019. 1. 23.(수)

2. 사업자금의 사용용도

# 가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ㅂ	선정기간		
사람네정사	দাওশ শূভ	신성경격	국	지	융	자	신경기신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리적표시	지방자체단체	자체	20	30	20	30	전년도 1분기
등록단체·법인							

#### ○ 사업 목적

- 임산물의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고부가 가치 창출

#### ○ 지원 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 \* '임산물 표준규격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7-15호(2017.2.10.) 참고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의 50%이내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가 능

#### ○ 지원 구분 및 한도

- 임산물 상품화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 상품화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연도는 지원 불가능(격년 지원 원칙 단, 수요부족 등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속지원 가능)

# 나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사람대경자	네정자 건정 	신성공격	국	지	융	자	신청기신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 방자체 단체	자체	20	20	20	40	전년도 1분기

#### ○ 사업 목적

- 임산물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로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 방지 등 유통 조 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 지원 내용

-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방지를 위한 저장 · 건조시설 지원
- 전처리(세척·살균·예냉) 및 부가가체 제고를 위한 가공장비 지원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버섯류, 수실류, 산나물류 등)과 저장기간 연장을 위해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저온 유통차량 및 물류기자재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임산물 유통차량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적재함 길이 2,500㎜ 이상 / 냉동탑차 중복지원 불가						
	(냉동·장탑차)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유통기자재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저장·건조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단순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등						

- \* 지자체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운영 및 통합하여 자율적 집행 가능
- \* 저장 · 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설보완으로 지원 가능
- \* 시설 사업 등과 연계되지 않은 개별 기계 장비·기자재 구매 지원은 2/4분기 이내에 지원 및 예산 집행 완료

(단, 해당연도 사업 중 2/4분기 이전 재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3/4분기 이내 집행)

#### ○ 지원 구분 및 한도

- 냉동·장탑차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 유통기자재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 저장·건조시설 : 국비 20백만원/건(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 \* 저장·건조시설은 100m²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장비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 \* 탈삽제 : 국비 4백만원/kl 이내

-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사업별 평균단가 및 지역 실정 등에 따른 지자체 건의 등을 근거로 하여 단가 적용
    -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서류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농협 등 구매 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 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 4. 행정사항

○ 사업공고 : 2019년 1월 10일

○ 신청서 접수 : 2019년 2월 10일한

○ 사업 신청자 심의 : 2019년 2월 28일한

○ 보조사업자 선정 : 2019년 2월 28일한

○ 보조사업 교부결정 및 추진 : 2019년 3월 ~ 2019년 10월한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2019년 11월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자율사업)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	등록번호					
신	성 명 (대표자명)			농업	경영체 록번호			생년월	일			
청	주 소						전호	<b>가번호</b>				
자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	고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임업인, 법	인, 협동	동조힙	, 기타		참여농기	수				성
	사 업 명											
신	사업예정지 (번지까지 기재)											
청	사 업 비	기 어 비 계			보조금 국비 도비				융자		담 기타	irì
내	시 <sub>됩</sub> 미 (천 원)		<u></u>		도비		군비		ਲਾ∕।		자キ	
용	사업내용별 규모(량)							1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업신청과 관련하 ·의합니다.			l본규 덩기곤			1항의 아래의			하여 처리		청하며 것에
	사업신청과 관련 사업신청과 관련	된 붙임의 개 된 붙임의 개	인정보의 인정보의	리 수 <sup>&gt;</sup> 리 제-	집·이용 <sup>0</sup> 공에 동 <u>9</u>	에 동으 의합니			년	<u>.</u>	월 또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_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임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자율사업)

##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구분	임야	<u>1</u>	<u>r.</u> -		밭	과-	수원	모	¦초지	기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품목	버섯류	산나	물류	ō	ᅣ초류	수역	엽류	익	용류	기타		7:	1
현 황 (ha)	재배면적													
		관수시	설	저은	2저	장고	일빈	·서장」	2	선	 ]별기		フ] [	라
	개별	관 정 :	ha			m²		]	m²		대			
시설	시설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저온저장고	관	수시설	널	산림 <sup>2</sup> 관리		수송	-차링	jŧ	퇴비사		저징	고
현 황	시설	r ( 동	m² (		ll소 톤)		식	(		대 톤)		m²	(	m <sup>²</sup> 동)
	(주) : 수 <del>(</del>	송차량의 (	)안{	은 보유	우대-	수에 관	한 적	재량을	· 7]7	대				
	О													
기 타 사 항														

-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사 업 비(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합계	보조금			자부담				
				됩기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			
계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로 표시

#### <작성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별지 제3호서식 : 제26조제6항 관련]

#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	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년	-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	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⑨ 총사업비	⑩정부보조금
년도	에 시천본는 경격시합성		(m²)	(천원)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정선군 공고 제2019-55호

#### 2019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워사업 공고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보급으로 주민 난방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19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정 선 군 수

- 1.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희망하는 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 우 가능
- 2. 지원용도 : 주거용(주택용)
  -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주민편의 · 사회복지용 제외)
- 3. 지원자격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 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정선군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4. 지원규모 : 총20대(1세대 당 1대)
  -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가구는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 5. 지워단가
  - O 1대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6. 지원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7. 신청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

8. 신청서류 :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건축물 대장 또는 거주 확인 서류 첨부)

9. 문 의 처 : 군청 환경산림과(560-2169)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	성		명			생년동	월일							
신 청 자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	전화 : 휴대전화 :									
	사	업	명	목재펠릿보일러 지	루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	설:	치유	구형 	□ 기존 보일러 : □ 교체 □ 신규~	] 기존 보일러 : ] 교체 □ 신규설치 □ 겸용									
청 내	설:	치정	장소											
의 용	사 업 비 (원)		нј	계	국	고보조	지방비		;					
			)											
기본	규정 제2	26조	스제1항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규정에 의하여 신  하는 것에 동의합니	청하며 /									
	사업신	청괴	· 관련된	! 개인정보의 수집· . 고유식별번호(생년· ! 개인정보의 제공에	월일 등)의	의 수집ㆍ이용	용에 동의합	}니다.						
								201	.8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	첨부서류 : 건축물 대장 또는 거주 확인 서류 1부.													

- 39 -

정선군 공고 제2019-68호

####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신청(안) 공람·공고

㈜강원랜드에서 신청한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신청(안)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6일

#### 정 선 군 수

- 1. 공람목적 :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안) 주민의견 청취
- 2. 위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5-4번지 일원
- 3.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안) 조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 4.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안) 도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 5. 관련도서 비치 및 공람장소 : 정선군청 경제과(경제팀)
- 6. 열람기간 : 군보게재 다음날부터 14일(2019. 1. 24. ~ 2. 7.)
- 7.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경제과에 서면 제출
- 8. 기타사항: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경제과(033-560-2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